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현장십장이 공사현장에서 양수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한 결과 “뇌경색증 좌측, 우측부전마비”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

(85-1919 호 85.12.16. 취소)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성명 : 유 ○ ○
 소속 : (주) ○ ○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노동부 이리지방사무소장

주 문

노동부 이리지방사무소장이 85.9.17. 자 “유○○”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이리지방

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5.9.1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청구인은 (주)○○이 시공하는 호남고속도로 병행 관로공사 현장에서 십장으로 근무하던 지로서 85.7.14. 11:30 경 공사 현장에서 맨홀 위에 고인물을 퍼내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맨홀 위에 양수기 1대를 설치하고 양수작업 중 맨홀 위에 앉아서 양수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가 갑자기 앉은 자세로 옆으로 쓰러져 곧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한 결과 상병명 “뇌경색증 좌측, 우측 부전마비”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요양중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명은 “뇌경색증”으로 질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그 밖에 업무상 사유와 관계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의 재해로 인정,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 역시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통상 업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발병 당시의 시간이 섭씨 30도를 오르는 무더운 날씨였고, 용량이 큰 양수기의 매연이 심해서 동료 인부들도 머리가 아플 정도였으며, 입원 당시 측정 혈압이 120/80으로 측정되었으나, 혈압은 순간적으로 정신적 신경이 쓰일 때 상승되는 것으로서 섭씨 30도의 무더운 날씨와 매연이 있는 불량한 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에 기인하여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85.11.12. 유 ○ ○)
2. 원처분청의견서(85.11.9. 노동부 이리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결정서(85.10.31. 임 ○ ○)
4. 요양신청서(85.8. 유 ○ ○)
5. 소 견 서(85.8.6. 한양대학병원)
6. 소 견 서(85.9. 자문의 김○○)
7.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85.8.20. 한

양대학병원)

8. 현지재해조사복명서(85.9.16. 행정주사 보 정○○)
9. 질의에 대한 회신(85.9.11. 노동부장관)
10.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질의서(85.8.29. 노동부 이리지방사무소장)
11. 문답서(85.8.28. 최○○, 권○○)
12.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85.6.16~7.15. 유 ○ ○)
13. 사고보고서(85.7. 차장 최○○)
14. 담당감독자진술서(85.7. 차장 최○○)
15. 현장설명서(85.12.3. 소장 최○○)
16. 진술서(85.7.29. 한양대학부속병원)
17.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한양이 시공하는 호남고속도로 병행 관로공사 현장에서 십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07:30부터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동 공사현장 지하에 설치된 P.V.C관내에 견인성을 넣는 작업을 직접 행하거나 동료 근로자를 지시 감독하는 업무로서 재해발생 이전 85.6.28~7.10.까지는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되는 작업관계로 인하여 기 시설된 매립 P.V.C관이 토목공사의 포크레인 작업으로 약 700미터의 부분이 파손되어 파손부분을 재시공하는 구간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보충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였으며, 85.7.9~7.13.에는 공사의 90% 진척율에 따른 공사 정산에 따른 작업진도 보고서 관사급 자재의 정산 등으로 현장 근무후 밤늦게까지 소장 “차○○”과 함께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전 공사구간내에는 총 8개의 다리가 난공사 부분으로 다리의 확장비 임의설치와 확장공사의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작업수행에 어려움이 따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사실이 85.12.3. 현장소장

“최○○”의 현장설명 및 진술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업무상 과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되므로 업무상 과로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원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상병을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조회하였던 바, 소견이 “뇌경색증과 고혈압과의 인과관계 : 뇌경색증의 원인은 두 개강내외의 뇌동맥에 협착 혹은 폐쇄에 의하여 뇌순환 장애를 일으켜 발병하게 되며 따라서 동맥경화증, 죽종, 뇌혈전증, 심장질환, 뇌색전증, 뇌혈관 경축 그 외에 저혈압증, 심부전증, 혈액점도 변화, 저혈당증이 포함되고 뇌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는 2차적으로 고혈압이 병발하게 되며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뇌경색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뇌경색증 및 우측 반신마비의 발병원인 : 뇌경색증이 대뇌반구 운동 중추부근이나 뇌기저 핵부에 발생하게 되면 반대편 상하지에 반신마비 증상을 일으키게 됨. 뇌졸중(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과 뇌경색증과의 차이점 : 뇌졸중은 크게 나누어 뇌출혈과 뇌경색증으로 대별함. 따라서 뇌경색증도 뇌졸중의 하나이며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내 혹은 뇌실 및 지주막하강에 출혈

이 생기는 것이며,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협착되거나 폐쇄되어 일어나는 질병임”으로서 이상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이 85.7.14. 11:30경 발병하여 곧 전주해수병원, 적십자병원, 전북의대병원 등에서 응급조치 후 85. 7.15.

13:10경 한양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하여 측정된 혈압이 120/80mmHG으로 비교적 정상으로 나타나 있으나, 자문의 소견을 보면 “기존질병의 악화에 의한 발병상태로 판단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청구인의 개인건강진단표가 없어 정상시의 혈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병명에 대한 조회결과 및 자문의 소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평소 뇌혈관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기존질환을 소지한 청구인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로하므로써 갑자기 고혈압이 상승하여 “뇌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신청을 불응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고 3 재학생이 추천의뢰로 회사에 근무중 “ 1) 뇌실질 내출혈 후두엽 우측 2) 동정맥 기형파열 ”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

(86-33 호 86.4.21.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1동

성명 : 이 ○ ○

소속 : ○○철강(株)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인천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5. 11.28.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삼화철강(주)에서 경리보조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85.6.25. 출근후 머리가 아프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동료 여직원이 택시를 태워 귀가 시켰으나, 증상이 심하여 청량리 소재 동산성심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 상병명 “1) 뇌실질 내출혈 후두엽 우측 2) 동정맥 기형파열”로 진단되어 '85.6.27. 한양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중인자로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 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고3 재학중 추천의뢰를 받아 '84.11.12. 동사에 입사하여 경리보조로 근무하여 왔으며 '85.6.23.(일요일)은 집에서 쉬고 6.24.(월)은 몸이 아파 결근을 하였으며, '85.6.25. 회사에 출근한 후 발병하였으며, 근로형태가 특별히 과중한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사고전일 아파서 결근한 점으로 보아 본인의 지병이 이미 집에서 발병되었으며, 자문의 소견도 “재해내용이 산업근무와의 연관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므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3년 동안 개근할 정도로 건강하였으며 입사한 후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

명 “1) 뇌실질 내출혈 후두엽 우측 2) 동정맥기형파열”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6.2.5. 이 ○ ○)
2. 원처분청 의견서('86.2.10. 노동부 인천 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5.12.23. 임 ○ ○)
4. 요양신청서('85.11.6. 이 ○ ○)
5. 요양결정 결의서('85.11.28. 노동부 인천 지방사무소장)
6. 소 견 서('85. 한양대학 부속병원장)
7. 진 단 서('85.8.1. 한양대학 부속병원 장)
8. 진 단 서('85.11.14. 동산성심병원장)
9. 문 답 서('85.8.27. 홍 ○ ○)
10. 문 답 서('85.9.2. 김 ○ ○)
11.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 청구인의 상병명 “1) 뇌실질 내출혈, 후두엽 우측 2) 동정맥기형파열”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 발병직후 최초로 청구인이 입원가료한 동산병원 발행 진단서('85.11.14.)를 보면 “상병명 : 뇌실질 내출혈 후두엽 우측(동정맥 기형파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됨), 갑작스러운 두통 및 구토증세로 '85.6.25. 입원하여 당일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후두엽에 동정맥기형으로 추정되는 소견과 이 기형의 파열로 인한 출혈이 발견되었음. '85.6.27. 한양대학병원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이며,

둘째 : 한양대학병원에 전원하여 '85.6.28. 발행 진단서를 보면 상병명이 1) 우측후두엽 뇌실질 내출혈 2) 동정맥 기형 후두엽 우측으로 진단되었고 “심한 두통, 현훈, 오심, 구토증이 현저함. 절대 안정, 약물요법이 요함. 가료후 정밀검사 실시하여야 확진됨. 뇌출혈 때문에 입원 가료가 요한다”는 소견이고,

세째 : '85.8.1. 자 한양대학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 1) 뇌실질 내출혈 후두엽 우측 2) 동정맥 기형파열이고, “ 후두엽 실질 내에 혈종이 발생하여 '85.5.27. 본원에 응급 입원되었음. 향후 적어도 2개월 이상을 입원자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서 청구인은 실질내의 혈종 즉 동정맥 기형의 기준증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네째 : 산재심사관이 한강성심병원에 동 질환의 업무상 질환 여부에 대한 의학적 자문(감정)을 구한 결과 “뇌동맥 기형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그 뇌동맥 기형이 선천성인 질환으로 이러한 뇌동맥 정맥기형파열은 하시하처에서 인간의 일상생활의 생리적인 동작시에도 파열되는 것으로 본 질병은 하등 작업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임”

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서 본 청구인의 뇌출혈은 선천성 질환인 뇌동맥기형(혈종)파열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재해이전 '85.6.23.은 일요일로 집에서 쉬고 6.24.(월)은 몸이 아파 결근하였고 사고당일도 출근하였으나, 머리가 아파 동료 근로자가 귀가시킨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발병 직전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청이 이 건을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무재해기계양 지상캠페인

무재해운동의 기본정신은

인간존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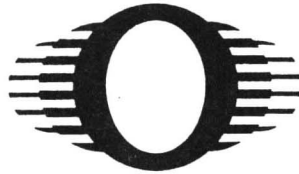
사업장에서는 그 심볼로

무재해 기를 게양합니다.

경영자 · 근로자는

펼럭이는 무재해 기를 보며

안전생활을 다짐합니다.



무재해

심볼의 가운데 부분은 숫자의 Initial인 “ZERO”로서 무재해의 의미를 표출, 양 끝의 라인처리된 6개의 원형태는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의 분야를 내포. 곡선과 직선의 현대적 감각처리로서 미적인 면과 무재해 심볼로서의 독보성을 창출.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